

2020-09(통권 제287호)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Issue Paper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훈 · 유지은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Key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이재훈 · 유지은

JaeHoon LEE · Jieun You

I. 개요

I. Introduction

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I. Key Contents and the Implication of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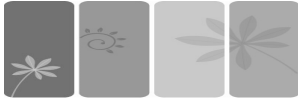
III. Conclusion

[참고문헌]

[Reference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요약

■ 국가연구개발(R&D) 추진 체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 정부R&D 예산 증대 등 R&D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낡고 복잡한 국가R&D 과제 관리 법령 체계의 혁신 필요
- 공동관리규정(시행령)의 타 부처 적용 한계 등 공통 규범으로서의 한계로부터 탈피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의의

- 공동관리규정 제정 이후 좌초된 다수의 입법 시도에 비해 내용, 형식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대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 연구현장으로부터 제기된 국가R&D 혁신방안 및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연구자 중심의 국가R&D 추진' 철학을 명문화
- 특별법으로서 타 법률 보다 우선 적용되며, 각 부처별 행정규칙, 지침 등 운영 규정 모두 동 법의 내용 및 틀 안에서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제도 운영과 서비스 전달 기반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사점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제의 혁신과 더불어 자율과 책임의 균형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혁신이 지속되는 기틀을 마련
-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정보 등 기존의 모호한 개념에 대한 정의조항 신설 및 명확화
- 타 법률 대비 특별법적 지위 명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총괄의 책임성 강화
- 사전검토를 통한 선정평가 내실화 및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 연차협약·연차평가 등 불필요한 연차별 관리 관행의 폐지 명시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연구자의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을 명시하고 원칙적 소유관계를 정립
-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인력 등에게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 처리 의무 부여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의 규정 및 정기적인 지정·운영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 연구지원 체제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기준 및 관련 교육·훈련의 근거 제시
- 국가연구개발 행정체도의 운영 체계를 명문화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법령 해석 체계 마련
-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체계 마련
-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연구자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 마련

※ 본 이슈페이퍼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Abstract

- The need for legislation to innovate the national R&D system
 - Despite the rapid changes in the R&D environment, such as increased government R&D budgets, the need to innovate the outdated and complex national R&D management legal system
 - Lack of a systematic regulatory operating system for national R&D management
-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 The act takes precedence over the other laws, and all operational regulations, such as administrative rules and guidelines regarding the national R&D management
 - The act is based on national R&D innovation plan and policies proposed by researchers
- Key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 Establishing and clarifying the concepts such as ‘research support’, ‘national R&D activities’, and ‘R&D information’
 -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regarding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D
 - Emphasizing the transparency and professionalism in the selection and evalu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 Emphasizing the abolition of unnecessary annual management practices, such as annual agreements and assessment process

- Establishing the basis for regular surveys on the status of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anagement institutions
- Establishing the standards of research support to strengthen the support capabilities, and provide the basis for related education and training

I 개요

1. 국가연구개발(R&D) 추진 체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 국가R&D 추진 체제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문제점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복잡한 국가R&D과제 관리 법령,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에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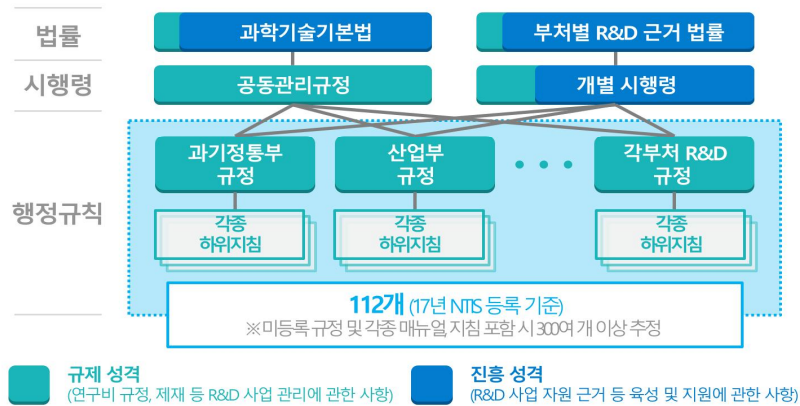
- 현행 국가R&D과제 관리의 공통 규범적 성격을 가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의 경우 2001년 제정
- 이후 정부R&D 예산이 약 8배 증가 하는 등 R&D 환경이 급변하였으나 법령 틀은 제자리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R&D 예산 : ('00) 3.75 → ('20) 24.22조원 (한용용, 김주일, 2020)

■ 공동관리규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형태로 공통 규범으로서의 한계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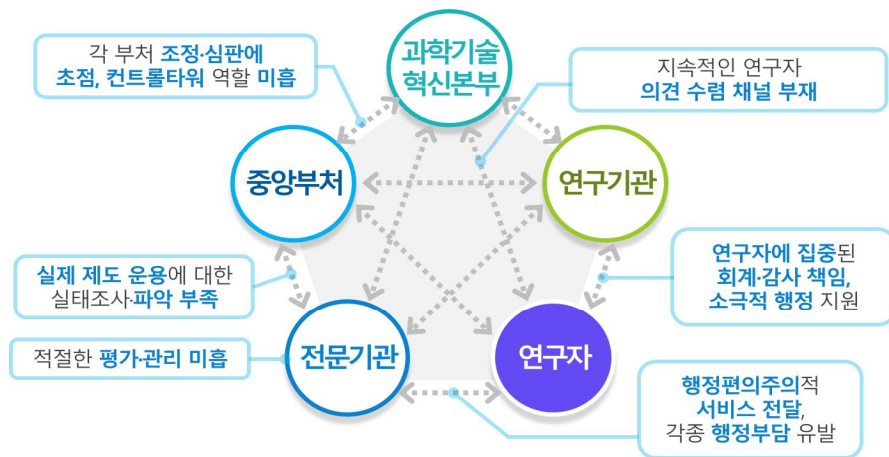
-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학기술기본법’)에는 포괄적으로 근거 사항만 몇 개 조항으로 존재하는 상황
- 대부분 주요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타 부처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 하위에 별도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이 없어, 법령으로 정하기 어려운 세세한 사항까지 공동관리규정에 규정되어 행정 효율의 저하 현상 발생

〈표 1〉 공동관리규정 체계의 복잡성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 개별 부처별 행정규칙이 연구자들에게 긴밀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잡한 법규 체계는 연구자에게 각종 불편을 초래하고 규제와 부담으로 작용
- 국가R&D과제 관리 규정의 총괄 운영에 애로 존재
 - 현행 공동관리규정은 국가R&D 중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대행을 통해 추진되는 공모성 과제(예산 기준으로 20조원 중 50%인 10조원)에만 적용
 -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률의 명문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자에게만 책임과 부담이 집중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그림 1] 현행 국가R&D과제 시스템 관계도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의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좌초된 다수의 입법 시도와 비교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안)은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국가R&D에 대한 철학과 체계화된 내용을 반영한 법률
-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연구 현장을 고려한 법률로 인정

■ 국가R&D과제 관련 체계 전반에 걸쳐 혁신적 내용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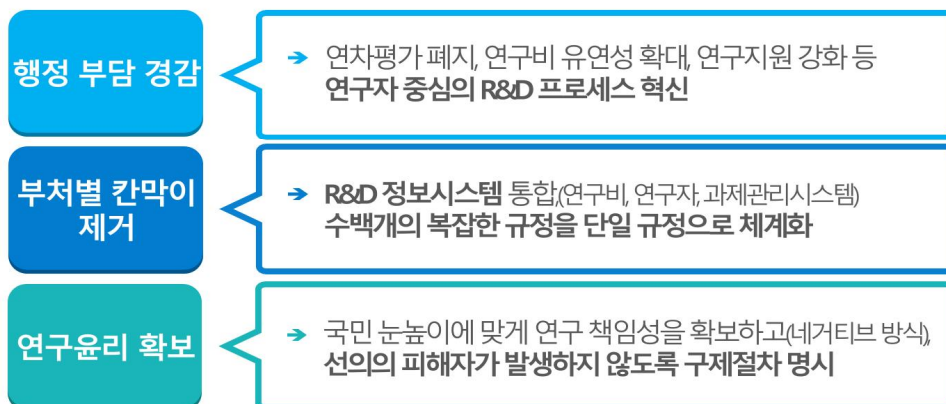
- 현행 공동관리규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탈피하고 국가R&D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반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타 법률 대비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 국가R&D과제 추진을 위하여 각 부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정들도 모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내용과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국가R&D과제 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관리 기준 및 원칙을 통일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방향 마련
 - 향후 국가R&D 제도 개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국가R&D과제에 관한 관리 기준과 원칙의 유지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등의 해석 체계 마련
 -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모호한 규정 적용 문제를 해소 가능
 - 일관성 있는 행정제도 운영과 행정서비스 전달의 기반 마련

■ 국가R&D과제 제도 개선의 내용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수렴한 기본법

- 국가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연구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소해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
 -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방안’(2017.11월),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18) 등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출된 혁신 방안과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2018.3월), ‘국가R&D 혁신방안’(2018.8월)을 통해 마련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한 국가R&D 혁신 정책 반영 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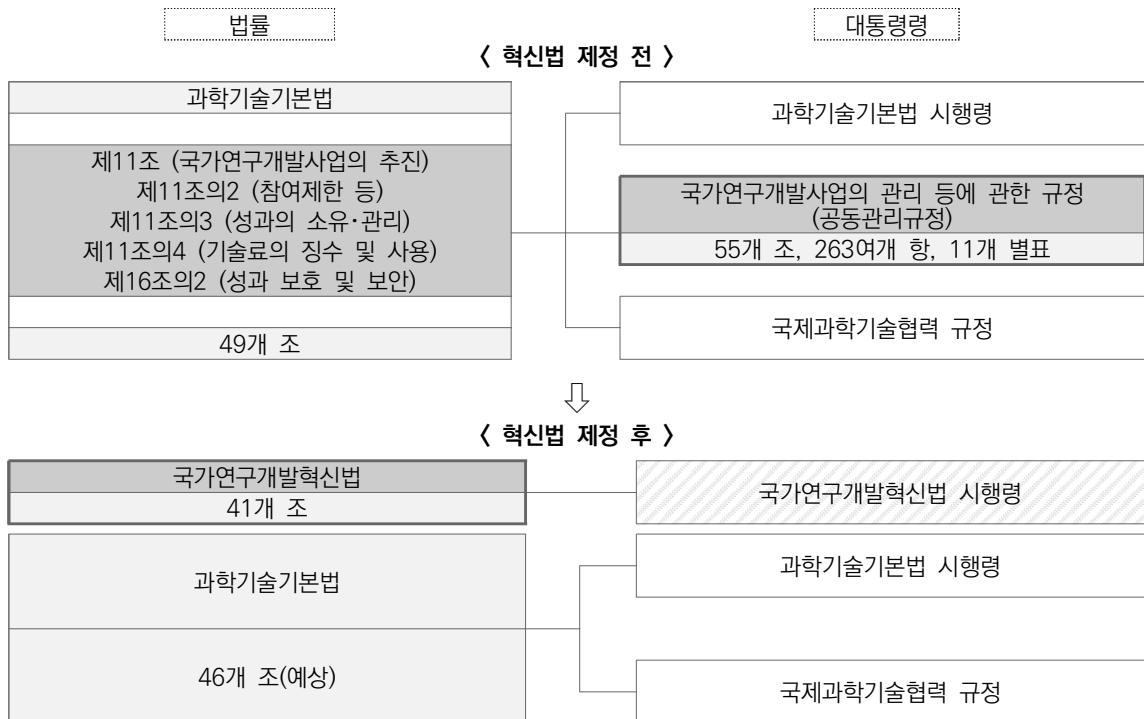
- 공동관리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축조되어야 할 일부 내용을 분리하여 조문 구성
 - 과학기술기본법 내 국가R&D과제와 관련 있는 5개 조문을 이관
 - 공동관리규정 중 법률상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격상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가R&D 관리 규정 체계 변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전·후 기존 법령 비교

- 과학기술기본법 내 R&D과제 관련 조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이관
 - 제11조제2항~제5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6조의2제2항, 제3항
 - ※ 공동관리규정에서 법률로 필요한 내용을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법률 형태를 빌어 일부 입법되어 있던 것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이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21.1.1)에 공동관리규정은 폐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정의조항(연구개발기관 등 용어 신설) 일부 변경 필요

〈표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전·후 기존 법령 비교



출처: 유지은, 이재훈(201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문 세부 체계

〈표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문 세부 체계

현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공동관리규정」			
제1장 총칙 (일부 내용)			제1장 총칙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항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정부의 책무)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항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공동관리규정 제2장 중 일부 제1절 사업의 기획·공고 제2절 ~ 제3절, 과제의 선정 / 협약 제4절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제5절 ~ 제6절 성과보고·평가 / 정산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1조의3(성과의 소유·관리)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공동관리규정 제3장 연구성과 귀속·활용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 관련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제 확립 및 역량 강화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25조(연구지원 체계의 평가)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공동관리규정 제4장 기술료 징수·사용			제3절 국가연구개발제도의 혁신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수렴 등)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공동관리규정 제5장 보안 및 정보관리			제4장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조치	
제16조의2(성과 보호·보안) 제2항, 제3항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4항			제5장 보칙	
제11조의2 (참여제한 등)			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9조(발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41조(발칙)	
공동관리규정 제6장 참여제한·사업비환수				
제7장 보칙 (일부 내용)				

출처: 저자 작성

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목적 명시 및 정의 신설로 용어 일원화

■ 목적 조항에 국가R&D 추진 체제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국민경제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있는 만큼 각각을 지향점으로 동등하게 명시
-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 혁신’과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제시
-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R&D 전 단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취지 반영

■ 정의 조항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 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규정을 마련
 - 현행 법률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100여 개에 달하는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어떤 법률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음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
- 연구지원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용어의 뜻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연구지원 체제 확립 등을 위한 토대 마련
 - 현행 법령상 연구지원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고, ‘연구행정’ 또는 ‘기술지원’ 등으로 통용되는 상황
-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전의 활동(신청)과 연구지원, 연구자의 과제 수행과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는 평가단·위원회의 활동 등을 포함
 - 이와 연동하여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제7조),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제32조제2항제1호) 등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평가단·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
- 기술료의 정의를 법에서 규정. 특허법 등 현행 법률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실시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사무 총괄 명확화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국가R&D과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국·공립연구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제)은 현재도 각 부처별 직제 등 다른 법령을 적용
 - ※ 주요 국·공립 연구기관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 현행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2호(사업 공고의 생략·단축), 제12조제3항제2호(참여 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12조제5항(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제19조제14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증명) 등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예외 규정
 - ※ 국제공동연구 관련 주요 사업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산업부),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교육부)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특별법적 지위 명시
 - ※ 특별법은 특정 분야, 특수 상황 등에 한정하여 기본법 또는 일반법을 배제하고 예외적인 규범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법체계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부처별·사업별로 수많은 개별 법률 및 행정규칙이 운영되어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연구 현장의 혼란 및 비효율을 초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할 경우 개별 R&D 법률과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속한 부처나 사업에 따라 관리와 책임이 상이한 형평성 문제 발생 해소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혁신본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 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법령 및 행정제도의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3. 연구개발과제 사전 예고 의무화 및 사전검토·선정평가 분리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 사전 예고 의무화 및 정기적인 수요조사 실시 규정 마련

-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과제 추진 등의 예고, 수요조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공모 등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전의 절차 규정 신설
- 사전 예고를 의무화하고(제1항), 정기적인 수요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제2항)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내실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도모
-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전략적 육성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상향식(bottom-up) 추진 방식을 원칙으로 명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제4항)하여 상향식(bottom-up)을 원칙으로 제시

■ 사전검토를 선정평가와 분리하여 평가의 전문성 제고

- 연구계 안팎에서는 비전문적이고 부실한 선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원인으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단기간에 많은 연구개발과제를 검토하는 현실을 지적
- 사전검토와 선정평가를 분리하고, 선정평가 시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타당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 폐지

제11조(협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및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차협약 폐지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다년도 협약 체결을 원칙(협약기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여 연구비 이월을 허용

- 현행 법령상 연차협약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관례적인 연차협약 체결로 인한 연구 행정상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연차협약 폐지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상 자율성 제고 기대

■ 연차평가 폐지

- 관례적으로 실시해온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간소화
 -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 초래, 연 단위 성과 요구에 따른 논문 쪼개기 및 특히 쪼개기 등의 성행 방지
- 연차평가 폐지 시 연도별 성과평가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어렵게 되므로,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연차평가를 실시하되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성과활용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연차보고서는 제출하도록 규정
 - ※ 연차보고서: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도의 연구의 연구 수행에 대한 내용, 주요 성과, 기대효과를 정리하여 부처와 전문기관에 보고하는 자료
 - ※ 연차평가: 연차보고서에 대해 연구책임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평가자의 검토를 통해 평가결과와 의견을 남기는 행위

5. 과제평가단 전문성 및 결과 통보의 투명성 강화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현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주로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임을 고려

- 현행 공동관리규정은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증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완화

■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보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특별평가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평가대상자 및 소속기관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본 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연구자의 권익 보호

6.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원칙 정리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고만 규정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원천적 권리를 천명
- 다만,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 명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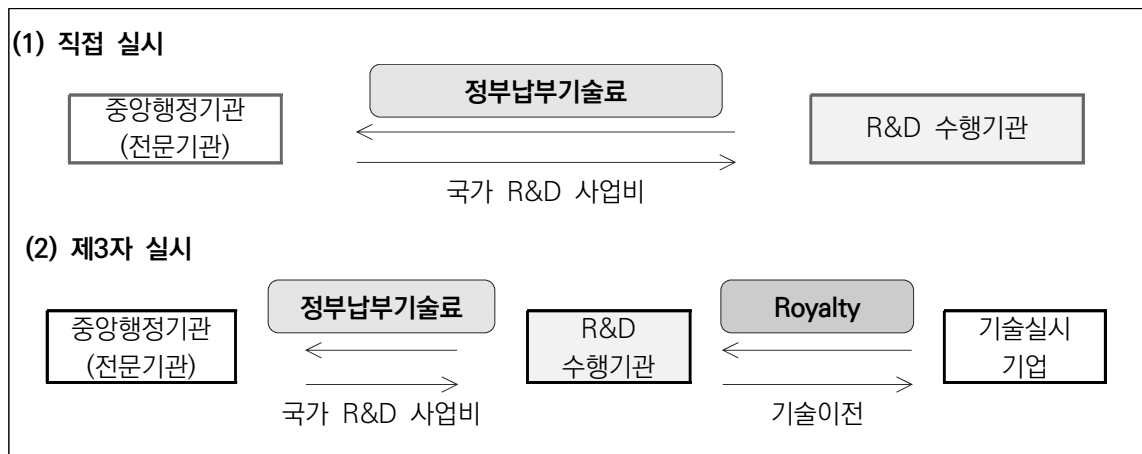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표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문 세부 체계



출처: 저자 작성

■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및 기술료(R&D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정부납부기술료 법적 근거 마련

- 기술료는 ① R&D 수행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와 ② R&D 수행기관이 제3의 기업에 기술이전 후 받는 ‘Royalty’로 구분

※ 정부납부기술료 : 최근 3년간 정부납부기술료의 평균 징수액은 약 1,835억 원으로 현재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의 R&D 재원 확보 수단의 하나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의무는 기업(영리기관)에게만 있음(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는 2008년 12월 폐지)
- 정부납부기술료는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규정이 없고, 법률 근거 없이 「공동관리규정」에만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법적 근거 마련

● 기술료(‘Royalty’)의 사용용도 규정

- 기술료의 사용용도를 ① 참여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직원의 근무의욕 제고 및 R&D 투자 촉진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

8.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방법, 절차 등
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은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 기준 확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체, 범위,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정보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평가위원 등을 포함), 연구지원인력 및 조직 모두는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선정, 평가 등 필요한 자료의 중복 제출을 방지하고, 정보입력 소요로 인한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 기대

9. 연구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실태조사 제도 신설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 관련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생략)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핵심적인 역할 강조

- ※ 연구관리전문기관 : 각 부처를 대행하여 정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7년 기준 약 1,500여명의 관리 인력이 19.5조 원 규모의 R&D예산 중 55%인 약 10.7조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을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에 집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
 -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었던 연구관리전문기관 별 상이한 규정·절차시스템으로 인한 연구자 부담, 하나의 부처 내에서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분산에 따른 비효율 등의 해소 방향성 마련
 - 각 부처별 대표 전문기관 외에도 연구자에게 사실상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사업 및 과제 관리의 전문성 제고와 관리 사각지대 해소도 기대
-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근거 신설
 -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정부와 연구자·연구기관 간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전문기관의 기획·관리·평가 전문성을 제고하여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
 - 정부 제도와는 별개로 임의 운영되고 있는 전문기관 자체 지침·관행 등을 철폐하여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

10.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제 확립 및 역량 강화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하 “연구지원조직”이라 한다)을 갖추는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연구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연구개발기관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2. 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연구지원조직·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제25조(연구지원 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연구지원 체제 확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 등을 갖추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 체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연구지원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 정도 등을 포함한 연구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에 반영

■ 연구지원 체제 확립을 위한 근거 신설

-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전담인력 및 조직이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자가 연구비 관리·정산 등 연구지원 업무에 상당시간을 사용함에 따라 연구 몰입도 및 성과 창출이 저해된다는 지적 해소 가능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 체제의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

■ 연구지원 체계의 평가 실시

- 연구지원 체계 평가는 현재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수행 중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확대 실시하려는 취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제 구축 의무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지원 기준 준수 정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간접비 계상·집행·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연구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11.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의 제도화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이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안의 내용을 다음 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내부 규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운영하되, 이 법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넘어 연구현장을 규제할 수 없도록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는 법률의 미비로 타 법률에 기반하여 운용 중인 행정제도가 다수 운영 중이었으나, 제정안을 통해 법률과 행정제도 간 일관성 확보 기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관계법령 및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해석 시 동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도록 규정

■ 관계법령 및 행정제도의 해석 체계 마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 법 및 관계 법령 등의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자문을 요청하는 법령 해석 체계를 마련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 시책 마련 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연구개발 시책이 파편화되지 않고 일관성 확보하려는 취지

12.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제척기간 신설, 재검토 체계 마련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사유와 기준을 구체화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조치의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
 - 최근 부실학회 참가 및 자녀 논문 저자 끼워 넣기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 강화 요구를 반영

〈표 6〉 종류 및 범위 비교

제재처분 종류	제재처분 범위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최대 5년(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년)	최대 10년 (연구지원은 참여제한 대상에서 제외)
제재부가금	용도 외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
환수	이미 출연한 연구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	제재처분에서 제외 ※ 제재처분이 아니라 국가R&D과제 협약 상 조치로서환수

■ 제재조치에 대한 제척기간 신설

※ 제척기간 :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됨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에는 제재조치에 대한 제척기간 규정 부재
 - 제재처분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부처는 의무 위반행위 발생 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언제든지 재제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오면서, 제재사유가 발생한 과제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척기간을 신설
 - 국민인 연구자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취지
 - 실제 제재사유가 있는 과제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재조치 대상이 인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확보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위원회 설치

- 각 부처가 주체가 되는 ‘제재조치 평가단’과는 별도로 과기정통부 소속의 ‘연구자 권익보호 및 부정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
 -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부처(부처별 제재조치 평가단)관이 다시 심사하지 않고 별도 위원회에서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재조치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보장하여 연구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
 - 과기부 소속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재검토를 받도록 하기 위함

1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 자산(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유형 자산에 한정한다)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지 규정

-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유형 자산(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한정)의 손해에 대하여 연구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금지
- 연구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 기관 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연구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한 재원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해서, 연구자가 계약책임이든 불법행위 책임이든 지지 않도록 함

III

결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의 의의

- 연구개발 통합법 제정 시도가 불발된 지 20년 만의 성과
 - 부처별로 상이했던 규정이나 제도가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 가능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 제거
- ‘기획-선정-수행-평가-보상-행정’의 국가R&D과제 수행 전(全) 단계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혁신을 향한 첫걸음
 - 연구자의 자율·창의를 확대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개별 국가R&D 관리규정을 일원화
 - 모든 국가R&D과제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
-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R&D 환경에서 분야별 발전과 혁신을 위해 각자의 책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실효성이 있는 시행을 위한 준비 필요

-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함께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되기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은 길지 않음
 - 법률의 제정 못지않게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시행령에 기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는 각 부처 R&D과제 관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만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 부처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두는 예외를 허용할 수는 있으나, 부처 특성을 반영하는 사항만 한정적으로 규정 권한을 위임해야 함
 - 당초 입법 취지 중 하나인 규정 간소화를 위해서는 하위령 마련 시 기업 등 다양한 연구수행 주체의 의견을 고려하되 각 부처별 규정 난립 방지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 - 개별 부처 - 연구기관 - 연구자로 구성되는 국가R&D 추진체제 내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동 법률 체계의 완성이 요구됨

참 고 문 헌

- 이재훈 외, “국가연구개발 통합 법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종조 2019-2-2, 2020
- 이재훈 외, “국가연구개발 통합 법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종조 2018-2-2, 2019
- 이재훈 외, “연구자의 아이디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관 2018-002, 2019
- 이재훈 외, “감사 시스템 및 사례 분석을 통한 R&D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관 2018-003, 2019
- 유지은, 이재훈,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KISTEP InI(Vol. 29, Summer 2019), 2019
- 한응용, 김주일,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0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발의안(2018.12), 2018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과방위 검토보고서(2019.3), 2019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과방위 심사보고서(2020.5), 2020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법사위 체계자구검토보고서(2020.5), 20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방안” 발표자료(2018.12), 20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발표자료(2019.9), 2019



필자 소개

▶ 이재훈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연구위원·변호사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T. 043-750-2436 / E. jaehoonlee@kistep.re.kr

▶ 유지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연구원
- T. 043-750-2515 / E. youje8@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20-09 (통권 제287호)

|| 발행일 || 2020년 06월 22일

|| 발행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T. 043-750-2300 / F. 043-750-2680
<http://www.kistep.re.kr>

|| 인쇄처 || 주식회사 동진문화사(T. 02-2269-4783)
